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2020. 6. 8

세종텔레콤(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의 이용에는 전화서비스 기본약관, 시외, 국제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2. 인터넷전화번호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의거 부여 받은 070 번호
 3. GW(게이트웨이) : 이용자의 일반전화기와 연동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 IP-PBX : 기업구내/외전화를 인터넷회선 기반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5. 유무선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 장비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단말
 6. 이용계약 :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7. 이용자 : 회사와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8. 해제 : 회사 또는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9. 해지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0.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계약

제4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서비스

1.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 기업이 구내교환설비에 GW/IP-PBX를 설치 또는 유무선 IP폰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구내/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가정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 이용자가 유무선 IP폰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상대방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 소프트폰 : PC내에 전화걸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② 부가서비스

1. SMS 서비스 : 인터넷전화 또는 스마트폰에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 LSM 서비스 : 인터넷전화 또는 스마트폰에서 장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000 byte, 한글 기준 1,000자 까지)
 3. MMS 서비스 : 인터넷전화 또는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서비스
 4. E-CRM 서비스 : 지문인식기와 인터넷전화를 연동하여 학원 및 태권도장에 출석시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자동 출석 등록 및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출석 SMS 메시지 전송하는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5. E-CTI 서비스 : 인터넷전화 고객에게 IP공유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추출, 고객관리서버에 전달하여 고객사의 고객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CTI를 제공하는 서비스
 6. 세종 레코딩 서비스 : 계약자가 IP전화기 또는 Gateway를 설치하여 통화시 레코딩 및 기본적인 고객관리 솔루션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7. 세종레터링 서비스(Sejong Lettering Service) : 세종직통회선서비스 및 세종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고객 중 수신자에게 발신자가 지정한 문구를 착신 단말기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단, 발신자 지정문구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고객의 상호, 브랜드, 가입자 실명에 한하여 16Byte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수신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등록이 제한됨)
 8. CIT 서비스 : 이용자가 별도의 장비구입 없이 IP전화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P기반의 고객관리프로그램, 자동응답, 음성사서함, 스크린팝업서비스 등 기본적인 고객관리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9. 통화연결음 : 통화대기시 사용자가 지정한 음악이나 다양한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③ 인터넷전화 긴급통신서비스(112, 119등)는 소방방재청과 협력하여 위치정보 제공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114)와 전화번호부 책자등재의 경우 동의한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④ 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사업자는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 2. 정기(반기별) 고지 :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 3. 수시 고지 : SMS, DM 등
- ⑤ 회사는 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해당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유선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E-mail, FAX 등 기타 방식으로 제출하고 회사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 신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신청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4. 단말기기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등에 부적합한 경우
 - 5.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 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6.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이용자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 가입 서비스 회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함.

제9조 (전화번호의 부여, 변경 및 회수)

- ① 회사는 이용신청의 승낙 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단 우편신청 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어려운 경우와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부여한 전화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회사는 부여된 전화번호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회선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하며 다만 번호변경 요청 사유가 회사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 제한 회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사용이나 스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번호변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통)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승낙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 합니다. 개통 희망일 이전 개통 작업이 완료된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통합니다.
- ② 회사는 청약서 접수 후 개통 희망 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 희망 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 희망일의 7일전까지 회사에 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단말장비)

- ① 이용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회사으로부터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단말장비를 직접 구매할 경우 단말장비의 규격 등은 세종텔레콤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대여한 단말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고장 신고 및 수리)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 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이용자의 계약종류(서비스, 이용자수, 납입정보 등)의 변경
 -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요금의종류)에 의한 설치비용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 (이용권의 양도)

회사와 계약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15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 3.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기타 전화서비스 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④ 계약자가 가압류, 압류 등을 당하거나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1조(통화권 준수 의무)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⑥ 국제 전화 사용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6. 제6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7. 다만 타사의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가 구축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제16조 (이용제한)

- ① 회사는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제한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 서비스이용료를 감

면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체결한 해당 계약 기준에 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승낙에 따른 가입비를 납일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2. 서비스 이용 시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7. 기타 전화서비스 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 ③ 본조 제2항 제6호의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 ④ 본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일시 이용중단)

- ①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3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 4 장 요 금

제19조 (요금의 종류)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2. 통화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통화 이용료
 - 3. 부가서비스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 4. 설치비 : 가입자 단말에 대한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
 - 5. 기기사용료 : 회사로부터 GW등 가입자단말을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6.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이용료 :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상호접속에 의해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번호안내서비스(114) 이용시 부과하는 이용료로 케이티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 방법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국제전화 및 시내부가서비스 등 별표에 제공되지 않은 요금은 제공사업자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용시간의 산정)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중에 회선장애나 그밖에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이용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요금의 산정 등)

- ①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② 1일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③ 월정액으로 하는 요금에 있어서 개시일은 산입하고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때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사용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월정액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22조 (요금의 납부책임)

요금의 납부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집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자와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 1. 계약자가 별도의 요금납부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자
- 2. 요금대납을 신청한 자

제23조 (요금대납)

- ①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요금을 타인이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요금을 대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스팸관리

제2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

- ① 이용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발생시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제2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위탁)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26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및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문자 발송량의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29조 (번호이동 신청)

- ①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④ 스마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스마트폰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 2. 이 범주에는 USB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다.

제30조 (변경 및 등록)

-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자를 재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번호이동성 이용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 지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립기관인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변경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제31조 (통화권 준수 의무)

-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32조 (이용자 보호)

- ① 불법 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1조(통화권 준수 의무)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33조 (긴급통신, 정전시 통화 제한 및 통화권 변경시 위치정보 등록)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권을 이탈하여 사용하면 안되며, 정전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확한 긴급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통신이 변경전 주소로 전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긴급통신

제34조 (이용자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 (긴급구조 주소지 정보 제공 범위)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제36조 (스마트폰 인터넷전화)

- ① 스마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스마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7조 (주소지 정보 변경적용 시점)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 8 장 요금 감면

제38조 (요금감면의 대상)

- 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2제2항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1, 112, 113 등)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 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화(이하 "보도용 전화"라 합니다)
 3.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용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기관의 전화로서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한국통신 등이 보도용전화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신문사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1일 2만부 이상) 및 주간신문사로서 본사, 지사, 총국 및 지국이 없는 군 단위 1개 보급소
 2. 통신사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 지사
 3. 방송국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특수방송 포함)으로서 본사, 동 지사, 동 중계소 및 동 분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의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1]의 "마. 요금 할인 및 감면"의 '4.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과 같습니다.
- ④ 이용자는 감면사유가 해소, 변경되는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감면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세종텔레콤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이용고객이 직접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손해배상금액은 계약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9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1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36조(문자발송량의 제한) 및 제37조(불완료호 차단)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22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6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10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 제47조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본 약관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31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30일 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4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04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0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9조(전화번호의 부여, 변경 및 회수) 제3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 입니다.

가. 기본서비스 이용료

1.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 1) 기본료 : 2,200원/월/포트별
- 2) 설치비 : 55,000원/1회/단말별
- 3) 통화요금

구분	요금
인터넷전화로의 통화	42.90원/180초
일반전화로의 통화	42.90원/180초
이동전화로의 통화	13.09원/10초
영상전화간 통화	33.00원/60초

※ 동일 가입자간 인터넷전화 통화료 무료

※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다자간통화 서비스 등)를 이용함에 따라 이동전화로 발신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로의 통화요금"이 부과

2. 한도 요금제 서비스

- 1) 대상 : 기업
- 2) 설치비 : 55,000원/1회/단말별
- 3) 상품 종류

(단위 : 원/월)

구분	1회선 한도	2회선 한도	4회선 한도	8회선 한도	16회선 한도
기본료	55,000	110,000	220,000	440,000	880,000
월 이용한도	110,000	220,000	440,000	880,000	1,760,000
약정 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 한도초과 이용액에 대한 과금은 "기업용 인터넷전화서비스 통화요금"과 동일하게 과금 적용함

3. IP-Centrex 서비스

- 1) 기본료 : 2,200원/월/포트별
- 2) 설치비 : 22,000원/1회/포트별
- 3) 통화요금 : "기업용 인터넷전화서비스 통화요금"과 동일

4. 가정용 인터넷전화 서비스(세종프리)

- 1) 기본료 : 2,200원/월/포트별
- 2) 설치비 : 22,000원/1회/포트별 (고객 택배 수령 후 직접 설치 시 무료)

3) 통화요금

구분	요금
인터넷전화로의 통화	42.90원/180초
일반전화로의 통화	42.90원/180초
이동전화로의 통화	13.09원/10초
영상전화간 통화	33.00원/60초

※ 가정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간 인터넷전화 통화료 무료

※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다자간통화 서비스 등)를 이용함에 따라 이동전화로 발신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로의 통화요금"이 부과

5. 스마트폰 서비스

- 1) 기본료 : 1,100원/월/포트별
- 2) 발신자 부담 통화요금 : "가정용 인터넷전화 통화요금"과 동일

6. VoIP 정액요금제

(단위 : 원/월)

서비스명	기본요금	IP폰제공	무료통화	부가서비스
Biz+	6,600	없음	200분	발신번호표시
Biz 120	13,200	1년 약정		

- 무료통화 과금기준 : 200분/월(누적, 유무선 구분 없음)
 - 무료통화 대상 : 유선(VV, VL) 및 이동전화(VM)
 - 무료통화 초과시에는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통화요금' 적용
 - 국제전화, 특수번호, 060전화 등 부가 통화료 및 기타 서비스 요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Biz+ 서비스는 단독가입 불가
 - 약정기간 내 해지 시 IP폰을 반납하면 위약금 없음
- ※ IP폰 미반납시 위약금 : 80,000원 - (7,000원 X 사용개월수)

나. 부가서비스 이용료

1. 유료 부가서비스

서비스명	요금(월)	서비스명	요금(월)
발신번호표시	1,100원	음성사서함(VMS)	1,100원
착신전환	1,100원	착신거절	1,100원
통화중대기	1,100원	변경번호안내	1,100원
패키지서비스(유료부가3개)	2,200원		

※ 변경번호안내서비스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이며, 최초 1개월은 무료 제공

2. 무료 부가서비스

서비스명	요금(월)	서비스명	요금(월)
멀티번호	무료	발신번호보호	무료
단축다이얼	무료	익명발신 수신거부	무료
발신금지	무료	호전환	무료
콜릴레이	무료	그룹내 대표번호발신	무료
원격사무실	무료	지정번호 당겨받기	무료
동시착신	무료	3자통화	무료

3. SMS 서비스

1) 내용 : 인터넷전화 또는 스마트폰에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 이용요금

구분	요금
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11.00원/건
타사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16.50원/건
이동전화로 송신	20.90원/건

4. LMS 서비스

1) 내용 : 인터넷전화 또는 스마트폰에서 장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 이용요금

구분	요금
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38.50원/건
타사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40.70원/건
이동전화로 송신	42.90원/건

5. MMS 서비스

1) 내용 : 인터넷전화 또는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서비스

2) 이용요금

구분	요금
MMS(발송 구분 없음)	148.50원/건

6. 멀티MEET 서비스

1) 내용 : 메신저 기반의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자간 회의 서비스 제공

2) 이용요금

구분	요금	비고
ASP서비스	77,000원/월	
임대서비스	동시접속가입자 : 33,000원/월 등록가입자 : 8,800원/월	별도의 서버 구축
통합패키지서비스	2,200,000원/1가입자	별도의 서버 구축

3) 이용요금 할인

- 할인 내역

구분		할인내역
ASP 서비스	약정 할인	1년 약정 : 20%
임대서비스	약정 할인	1년 약정 : 20%

- 계약기간 중 해약할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 할인적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반환금 산정식 = 이용월수 X 월이용금액 X 약정할인율

7. E-CRM 서비스

○ 이용요금

구분	요금	비고
E-CRM이용료	55,000원/월	프로그램 포함
출결SMS	20.90원/건	1,000건/월 무료

※ 통화요금 : "가정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통화요금"과 동일

8. E-CTI 서비스

○ 이용요금

구분	요금	비고
일반형	2,200원/월	착·발신 검용
단독형	9,900원/월	착신전용

9. 세종레코딩 서비스

○ 이용요금

- 설치비 : 11,000원/1회/포트별
- 레코딩 기본료 : 9,900원/회선/월
- 통화 기본료 : 2,200원/회선/월
- 통화료

구분	일반유선전화로의 통화	인터넷전화로의 통화	이동전화로의 통화
통화료	42.90원/3분	42.90원/3분	13.09원/10초

10. 세종레터링 서비스

○ 비즈레터링

구분	건수	기본료	단가	비고
1구간	1 ~ 50,000건	2,310,000원	660,000원	최저이용료
2구간	50,001 ~ 100,000건		12.10원	건당과금
3구간	100,001 ~ 300,000건		11.00원	
4구간	300,001 ~ 1,000,000건		9.90원	
5구간	1,000,000 ~ 2,000,000건		8.80원	
6구간	2,000,001건 이상		7.70원	

- ※ SK텔레콤, LGU+ 가입고객에 한해 제공되면 단말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이용요금은 총건수 구간의 단가에 5만원을 제외한 건수를 곱한 값에 66만원을 최저이용료와 합산(5만원 이하 시 최저이용료 부과)

○ 오피스레터링

- 요금제는 내선번호 기준으로 적용
- 레터링 표기가 가능한 SKT, LGU+ 이동전화 단말에 한하여 제공됨
- SKT 이동전화 단말

요금제	발송건수	이용요금
Office 1	100건/월	1,100원/월
Office 2	200건/월	1,650원/월
Office 3	500건/월	2,750원/월
Office 4	2,000건/월	6,600원/월

※ 월 발송건수 초과 시에는 레터링 표기가 안됨

- LGU+ 이동전화 단말 : 1,100원/월

11. CTI서비스

○ 이용요금

상품명	요금	비고
SEJONG CTI Basic	3,300원/월	고객관리프로그램(클릭투다이얼,스크린팝업)제공
SEJONG CTI Voice	13,200원/월	고객관리프로그램,녹취서비스 제공
SEJONG CTI Multi	13,200원/월	고객관리프로그램,자동응답,음성사서함서비스 제공
SEJONG CTI Multi+	16,500원/월	고객관리프로그램,녹취,자동응답,음성사서함서비스 제공

12. 통화연결음 서비스

○ 이용요금

구분	Biz 컬러링	비고
월 이용료/번호별	2,200원	
음원제작비	55,000원	1회

13. 한도통화, SMS 선불요금제

○ 이용요금

구분	요금	비고
가입비	22,000원	o 1회/회선별
솔루션 이용료	11,000원/월	o 선불 SMS 솔루션 및 단말 이용료 : 11,000원/단말
한도 통화 기본료	5,500원/월	o 월 이용 한도 : 7,700원 1) 적용대상 통화 : 한도통화 대상은 국내 일반통화료(유선전화의 통화, 인터넷전화와의 통화, 이동전화와의 통화)이며, 국제전화, 특수번호, 060 등 통화료 및 기타서비스 요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별도부과) 2) 통화별 요금은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통화요금을 적용

		3) 한도요금을 초과한 통화는 '기업용 인터넷 전화 서비스' 통화요금 적용
SMS	11.00원/건	o 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16.50원/건	o 타사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20.90원/건	o 이동전화로 송신
LMS	38.50원/건	o 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40.70원/건	o 타사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송신
	42.90원/건	o 이동전화로 송신
MMS	148.50원/건	

14. 착신전환용 서비스

1) 내용 :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계약자가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2) 이용요금

서비스명	가입형태	기본료(회선)
착신전환전용	번호이동	5,500원
	070 신규	3,300원

3) 통화요금 :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통화요금을 적용

4) 시내전화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 시 해당번호로 타 서비스로 변경 불가

15. ARS(음성자동안내) 서비스

1) 내용 : 인터넷전화 대표번호로 착신된 전화에 대해 음성안내로 회사소개, 원하는 부서 및 지정된 번호로 자동연결하는 서비스

2) 이용요금

구분	ARS서비스	비고
월 이용료	5,500원/월	별도약정 없음

다. 기기이용료

1. G/W 장비 임대료

구분	요금
4포트	44,000원/월
8포트	66,000원/월
16포트	88,000원/월
E1	132,000원/월

2. IP-PBX 장비 임대료 : 별도 협의

라. 번호이동성 요금

구분	요금	비고
번호이동 수수료	2,000원/포트	

	46,200원/DID	DID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	7,700원/국선(채널)	DID포함

마. 요금 할인 및 감면

1. 장기계약 요금 할인

- 1) 내용 : 가입자가 이용기간을 사전 지정하여 계약하고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통화료 할인
- 2) 대상 서비스 :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 3) 적용 할인을

구분	1년	2년	3년
인터넷전화로의 통화	5%	7%	10%
이동전화로의 통화	3%	5%	7%

- 4) 계약기간 중 해약할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 할인적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

{(사용한 총 통화량) * (계약기간 적용요율 - 이용기간 적용요율)}

2. 자동이체 할인(2013. 5. 1. 부터 폐지)

- 1) 할인내용 : 납기내 납부한 이용료의 1%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
- 2) 적용대상 : 은행자동이체 신청고객
 - 2013. 5. 1. 기준 자동납부 이용자는 납부 방법을 유지하는 동안 동일한 할인혜택 적용

3. 요금감면

감 면 대 상		감면율
①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조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② 수해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전화 ③ 전화 및 전용설비에 대한 장애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④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00%
⑤ 보도용 전화		월 통화요금의 30%감면
⑥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 약관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1) 가입비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가입관련비용 일체 (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의료급여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단, 단말기 비용은 제외
--	---------------

2) 기본료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기본료 100%

3) 일반통화료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개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통화요금의 5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통화요금의 50%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감면 제공 회선 수

감면대상	제공 회선 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개인(가구)	1회선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시내·외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중복하여 감면 적용하지 않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단체(시설)	2회선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시내·외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중복하여 감면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팩스용 1회선 추가 가능

- 감면 감면 대상 통화료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와의 통화(영상통화 포함)에 따른 요금만을 의미(이동전화, 국제전화, 060 등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제외)

- 이동전화와의 통화 시 통화료 30% 감면 적용(월 11,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회선 혜택제공을 위해 세대주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갱신을 위해 1년(또는 6개월)마다 서류제출 의무(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예외)
- 감면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이 중단됨
- 번호안내서비스(114) 안내요금 면제(부가서비스, 다량안내 제외)

바. 인터넷전화서비스 최소품질 보장 제도

1. 대상 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되는 인터넷 전화
2. 최소품질 기준

구분	항목	기준값
통화품질	R값	70이상
	지연	150ms 이하
접속품질	호 접속 성공율	95% 이상

3. 최소품질 보장구간 : 회사 시설구간(회사 속도측정서버에서 이용 가입자의 단말까지)
4. 품질측정 방법
 - 1) 측정 서버 : 회사 품질 측정 서버
 - 2) 품질 측정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품질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함
 - 3) 호 접속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품질기준 수준을 웹사이트에 공지함
5. 보상 정책
 - 1) 보상 기준 : 30분간 10회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회수의 60%이상인 통화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 2) 보상금액 : 당일 요금 감면

[별표2] 신규 청약 구비 서류

1. 개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활용/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영주권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 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 ID카드 중 1,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법정대리인내방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입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